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임용 결격사유 적용기간
규정 및 마약류 관련 범죄자의 임용제한 강화〉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48호)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44호)

2025. 2.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5
1. 개요	5
2.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임용결격사유 기간 규정	10
2. 마약범죄 임용 결격사유 신설 및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임용 결 격사유(제적사유) 기간 신설	13
※참고자료: 관련 법령 조항	16

I . 제안경위

1.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206148)

가. 발 의 자 : 민홍철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2. 3.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4.

2.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207144)

가. 발 의 자 : 주호영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2. 31.

다. 회부연월일 : 2025. 1.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11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부사관 등의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이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의4).

2.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결격사유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마약류의 소지·관리·제공 등 마약 관련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하여도 결격사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장교 등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2023년 11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2024년 5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이에 마약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장교 등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15년간 임용이 제한되는 결격사유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6호의3라목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요

□ 개정안들은 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장교 등 군 간부의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현행법 규정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민홍철의원안 10년, 주호영의원안 15년), ②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를 15년간 임용이 제한되는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에 추가하며, ③ 마약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장교 등의 임용결격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의4 등).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민홍철 의원안	주호영 의원안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 6의2. (생략)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6의3. (현행과 같음)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생략) ② ----- ----- ----- ----- -----.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 -----

현행	민홍철 의원안	주호영 의원안
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가. ~ 다. (생략) <u><신설></u>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마약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 2, 제59조부터 제 64조까지 및 제6 5조의2에 규정된 죄
<u>6의4. 미성년자에 대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 간이 경과한 사람 을 포함한다)</u>	<u>6의4. 미성년자에 대 하여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를 범한 사람으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6의4. 미성년자에 대 하여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마약류 관 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u>

현행	민홍철 의원안	주호영 의원안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가. 실형(벌금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가. 실형(벌금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
	다.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다.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현행	민홍철 의원안	주호영 의원안
7.·8. (생략) ③ (생략) 제40조(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1. ~ 3. (생략) 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가. (생략)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7.·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제적)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현행	민홍철 의원안	주호영 의원안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74 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 정된 죄, 「스토 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스토 킹범죄 및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아 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 ----- ----- ----- ----- ----- 「스토 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스토 킹범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 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 제1항에 규정

현행	민홍철 의원안	주호영 의원안
다. (생략) 5.·6. (생략) ②·③ (생략)		<u>된 죄</u> 다. (현행과 같음) 5.·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2.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임용결격사유 기간 규정

□ 현행법 제10조제2항¹⁾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22. 11. 24. 선고, 2020헌마 1181)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①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하여 모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1)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생략)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2) [참고자료] 관련 법령 조항 참고

넓고 포괄적이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면서 결격사유가 해소
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②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
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
해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들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민홍철
의원안은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0년, 주호영의원안은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 현행법
의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³⁾.

□ 다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영구히 임용을 제한한 것을 위헌으로 본 헌법재
판소 결정, 형사미성년자(14세) 및 장교·부사관 임용 최고연령
(소위·하사 29세)⁴⁾을 감안할 때,

3) 「국가공무원법」의 경우 동일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임용 결격사유의 적용 기간을 20년으로 개정함.

「국가공무원법」(법률 제20627호, 2024.12.31. 시행)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용 결격사유의 적용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규정하면 사실상 임용을 영구히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므로, 민홍철의원안의 ‘10년’ 또는 다른 기간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국방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임용 결격사유 적용 기한을 ‘영구 제한’에서 ‘10년 제한’으로 개정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현행법상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군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령		38세
대위		34세
중위		31세
소위	20세	29세
준위	20세	50세
부사관	18세	29세

3. 마약범죄 임용 결격사유 추가 및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15년간 임용결격사유 신설 등

□ 주호영의원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 관리법」”이라 함)에 규정된 죄⁵⁾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장교 등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⁶⁾를 15년간 임용이 제한되는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가 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은 「마약류관리법」에

5) 「마약류관리법」은 다음과 같은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조항	주요 위법사항	형량
제58조	마약류의 수출입·제조·매매 및 그러한 목적의 소지 등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2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한 행위 등	4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9조	마약류의 수출입·매매 제조 목적의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하거나 관리·수수 및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 마약류 원료의 매매 및 매매알선 행위 등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0조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마약류의 사용 및 해당 마약류 사용을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 제공 등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61조	일반적인 마약류의 사용 및 해당 마약류 사용을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 제공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
제62조	마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타인 양도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3조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4조	마약류와 관련한 보고 및 변경보고 등의 누락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5조의2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 불응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제58조의2(벌칙) ①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규정된 죄를 임용결격사유(3년간 임용제한)로 추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를 범한 자를 임용 결격사유 및 제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미성년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이 클 것으로 보이는바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죄를 임용결격사유에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임용 결격사유가 되는 성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⁷⁾ 등과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범죄의 공익침해의 정도가 유사한 수준인지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예컨대, 개정안의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범죄는 마약류 수출입·제조·매매·사용 등 중한 범죄에서부터 비교적 경미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취급 허가증의 양도, 마약류 관련 보고 사항의 누락 등을 포괄하고 있는바, 3년간 임용이 제한되는 결격사유를 그 범죄유형 중의 일부로 제한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7) 「군인사법」 제10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사범의 임용결격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군인 이외의 일반직공무원, 경찰, 소방 등 타 직역 공무원은 아직 「마약류관리법」 위반(미성년자에 대한 마약사범 포함)을 임용 결격사유 및 제적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자의 임용결격사유 규정 여부 및 이를 규정할 경우 적용 기간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임.

□ 국방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 포함)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 규정에 있어 일반직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등 타 직역 공무원에게 법령상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군인에게만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10

※ 참고자료

□ 관련 법령 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